

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2-1339호

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35호(2002.04.23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76호(2008.03.17.)로 조합설립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36호(2011.11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‘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’에 대하여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0월 6일

성 북 구 청 장

- 공람기간 : 2022. 10. 6. ~ 2022. 11. 7.(30일 이상)
-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
 - 동소문제2구역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02-2241-2863),
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(02-764-3511~2)
-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
I. 정비계획변경(안) 주요내용

가. 정비구역 지정조서

- 1) 정비구역의 명칭 : 동소문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(변경없음)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동소문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	20,657.3	감) 2,171.3	18,486.0	-

3) 토지이용계획(안)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20,657.3	감) 2,171.3	18,486.0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계	5,337.5	감) 1,180.2	4,157.3	22.5	-
	도로	4,247.3	감) 90.0	4,157.3	22.5	대상지 북측 구역계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
	공원	860.0	감) 860.0	-	-	-
	공공공지	230.2	감) 230.2	-	-	-
획지	소계	15,319.8	감) 991.1	14,328.7	77.5	-
	획지1	15,319.8	감) 991.1	14,328.7	77.5	-

나.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면적(㎡)		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20,657.3	감) 2,171.3	18,486.0	
준주거지역	20,638.6	감) 2,152.6	18,486.0	
일반상업지역	18.7	감) 18.7	-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동소문동2가 33번지 일원	준주거지역	제3종일반 주거지역	2,152.6	250% 이하	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일부 필지 정비구역 지정 전 본래 용도지역으로 환원

다.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(안) 조서

1) 도로

■ 도로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	15	집산 도로	44	동소문동2가 290-3	동소문동2가 288	일반 도로	-	'02.04.23. (서고시 135)	-
변경	중로	2	1	12~15	집산 도로	53	동소문동2가 290-3	동소문동2가 288	일반 도로	-	-	-
기정	중로	3	2	12	집산 도로	277	동소문동2가 290-2	동소문동2가 46	일반 도로	-	'02.04.23. (서고시 135)	-
변경	중로	3	2	12	집산 도로	275	동소문동2가 291	동소문동2가 46	일반 도로	-	-	-
기정	소로	1	1	10	국지 도로	312	동소문동2가 290-2	동소문동2가 49	일반 도로	-	'02.04.23. (서고시 135)	-
변경	소로	1	1	10	국지 도로	214	동소문동2가 146	동소문동2가 2-3	일반 도로	-	-	-
신설	소로	2	①	8	국지 도로	149	동소문동2가 290-2	동소문동2가 208-1	일반 도로	-	-	-

■ 도로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경 사 유
중로 2-1	중로 3-1	•연장 및 일부구간 폭원 변경 - L=244m→53m, B=15m→12~15m	•기정 도시계획도로 내 정비구역 제척 부지 편입으로 인한 폭원 및 연장 변경
중로 3-2	중로 3-2	•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- L=277m→275m	•기정 도시계획도로 내 정비구역 제척 부지 편입으로 인한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
소로 1-1	소로 1-1	•기·종점 및 연장 변경 - L=312m→214m	•기정 도시계획도로 내 정비구역 제척 부지 편입으로 인한 도로 기·종점 변경
-	소로 2-①	•도로 신설	•정비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도로 신설

2) 공간시설(소공원, 공공공지)

■ 소공원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공원	소공원	동소문동2가 50번지 일원	860	감) 860	-	'11.11.10' (서고시 336호)	

■ 소공원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공원	• 면적 : 860㎡(폐지)	• 지하철 출입구가 예정되었던 부지제척으로 공공공지 폐지 계획으로, 소공원이 진입광장 으로서의 역할 상실 • 법적 공원녹지 확보 대상에 미해당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-	공공 공지	동소문동2가 172번지 일원	230.2	감) 230.2	-	'11.11.10' (서고시 336호)	
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공공공지	• 면적 : 230.2㎡(폐지)	• 지하철 출입구와의 연계부지 설치를 위해 결정된 공공공지로서, 해당 부지 구역계 제척으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구분	입체적결정 범위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-	공공 청사	동소문동2가 50번지 일원	면적(㎡)	-	증) 1,168.6	1,168.6	-	입체적 결정
				높이(층)	-	증) 지상 1~2층	지상 1~2층	-	

주)1 입체적 결정범위는 공공청사 연면적 중 전용면적 1,168.6㎡으로 하고 시설면적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.

- 공공청사 연면적 2,100.3㎡(전용 1,168.6㎡ + 공용 931.7㎡),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건축범위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건축물의 범위			비고
				건폐율	용적률	높이	
신설	-	공공 청사	동소문동2가 50번지 일원	50% 이하	420% 이하	32층 이하	공동주택 획지 내 입체적 결정(지상1~2층, 1,168.6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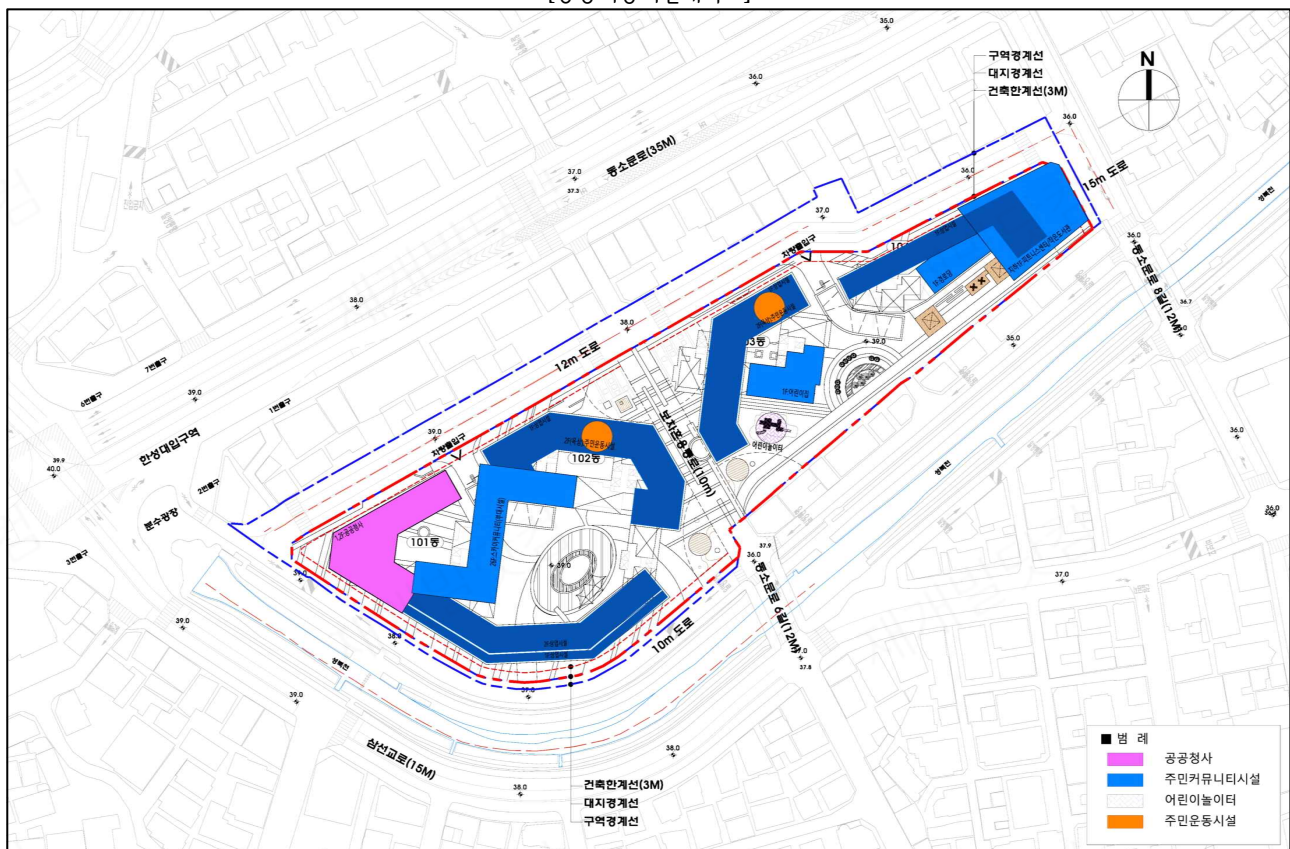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공공청사	• 면적 : 1,168.6㎡(신설) - 지상1~2층 입체적 결정	• 지역내 부족한 공공청사 조성을 통해 편의 증진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관리사무소/방재실/MDF	획지①	250.00	감)140.00	110.00	10㎡+(553세대-50세대) ×0.05㎡=35.15㎡이상
"	경비실	"	-	증)70.00	70.00	지상
"	소 계	"	1,591.00	증)2,569.00	4,160.00	-총량:세대×2.5㎡×1.25 =1,728.13㎡이상 -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(500~1,000세대 미만) 1.경로당: 225㎡이상 2.어린이집: 330㎡이상 3.작은도서관:158㎡이상
"	어린이놀이터	"	621.00	증)579.00	1,200.00	
"	주민운동시설	"	-	증)800.00	800.00	
"	주민공동시설	"	490.00	증)910.00	1,400.00	
"	경로당	"	220.00	증)20.00	240.00	
"	작은도서관	"	120.00	증)60.00	180.00	
"	어린이집	"	140.00	증)500.00	640.00	

[공동이용시설계획도]



마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결정 구분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기정	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20,657.3	획지①	15,319.8	동소문동2가 33번지 일원	215	-	-	215	-	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 시설 신축
변경	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18,486.0	획지①	14,328.7	동소문동2가 33번지 일원	189	-	-	189	-	아파트 4개동 및 부대복리 시설 신축

2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높이(m) (층수)	비고
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획지①	15,319.8	동소문동2가 33번지 일원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판매시설	37이하	337이하 (공동주택:282이하)	100m이하 (30층 이하)	
변경	획지①	14,328.7			60이하	420이하 (공동주택:378이하)	100m이하 (32층 이하)	

주택의 규모
및 규모별
건설비율

기정

- 주택 공급계획 : 421세대
- 건립규모

건립규모	기준	세대수	비고
합계	-	421세대(100.0%)	
60㎡이하	총 건립 세대수의 80% 이상	195세대(46.3%)	
60~85㎡		184세대(43.7%)	
85㎡초과	총 건립 세대수의 20% 미만	42세대(10.0%)	가변형구조 16세대이상

- 임대주택 건설계획 : 총 세대수의 17.34%(기준 17%이상)

건립규모	기준	세대수
합계	-	73세대(100.0%)
40㎡이하	임대주택의 40~50%	30세대(41.1%)
40~50㎡	임대주택의 40~50%	35세대(47.9%)
50~60㎡	임대주택의 10~20%	8세대(11.0%)

변경

- 주택 공급계획 : 553세대(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4조제1항에 따라 증가된 세대수 89세대 포함)
- 건립규모

건립규모	기준	세대수	비고
합계	-	553세대(100.0%)	
60㎡이하	총 건립 세대수의 80% 이상	329세대(59.5%)	
60~85㎡		178세대(32.2%)	
85㎡초과	총 건립 세대수의 20% 미만	46세대(8.3%)	

- 임대주택 건설계획 : 15.2%(기준 15%이상)
(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4조제1항에 따라 증가된 세대수 89세대 제외)

건립규모	기준	세대수
합계	-	71세대(100.0%)
40㎡이하	임대주택의 30%이상 40% 미만	28세대(39.4%)
40~50㎡	-	-
50~60㎡	-	43세대(60.6%)

건축물의 건축선에
관한 계획

- 대상지 북측 도로변 3m
- 대상지 남측 동소문로2길변 3m
- 대상지 동측 동소문로8길변 3m

■ 개발가능(상한)용적률 산정
- 기정

구 분	산정내용						
토지이용 계획	계(㎡)	공동주택 용지 (㎡)	신설 정비기반시설(㎡)			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(㎡)	대지(획지)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(㎡)
			소계	부지	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		
	20,657.3	15,319.8	5,337.5	5,337.5	-	291.3	-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•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-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·공유지 = $5,337.5\text{㎡} - 291.3\text{㎡} - 0\text{㎡} = 5,046.2\text{㎡}$						
기준용적률	• 계획(기준)용적률 =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210% → 변경 230% ※ 「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따라 60㎡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를 전제로 210% → 230% 적용						
허용용적률	•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β = 230% + 15% = 245% β = 라멘구조 : 10%, 신재생에너지 : 2%, 친환경우수등급 : 3%						
개발가능 용적률	•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+ 계획(기준)용적률 × 1.3α $= 245\% + (230\% \times 1.3 \times 0.3293) = 343\%$ 이하 ※ α =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/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$= 5,046.2\text{㎡} / 15,319.8\text{㎡} = 0.3293$						
건축계획(안)	• 건축계획(안) 용적률 = 337.0%(주거용적률 282.0%)						

- 변경

구 분	산정내용						
토지이용 계획	계(㎡)	공동주택 용지 (㎡)	신설 정비기반시설(㎡)			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(㎡)	대지(획지)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(㎡)
			소계	부지	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		
		18,486.0	14,328.7	5,178.47	4,610.22	568.25	185.68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•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-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-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·공유지 = 5,178.47㎡ - 185.68㎡ - 0㎡ = 4,992.79㎡						
기준용적률	• 계획(기준)용적률 =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210% → 변경 230% ※ 「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따라 60㎡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를 전제로 210% → 230% 적용						
개발가능 용적률	•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β = 230% + 20% = 250% ※ β =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(총 20%적용)						
	구분						인센티브
	우수디자인						최대 20% 이내
	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	에너지효율인증 1+등급,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					
	지능형건축물	4등급					
	합계						
	•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+1.3×가중치×α토지·지분+0.7×β현금·건축물) = 250% × (1 + 1.3 × 1 × 0.3198 + 0.7 × 0.0410) = 360.80%						
※ α =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/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= 4,424.54㎡ / 13,875.78㎡ = 0.3189 b = 건축물제공 환산면적 /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= 568.25㎡ / 13,875.78㎡ = 0.410							
예정법적상한용 적률	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」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시 법적상한까지 건축가능 - 419.93%						

■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소형주택 세대수 산정

정비계획 변경시(기준용적률 미상향) 최대 주거용적률			정비계획 변경시(기준용적률 상향) 최대 주거용적률		
상한용적률 = 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토지·지분 +0.7×α현금·건축물) = 210%×(1+1.3×1×0.3189+0.7×0.0410) = 331.93% 이하(주거용적률 298.74% 이하)			상한용적률 = 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토지·지분 +0.7×α현금·건축물) = 230%×(1+1.3×1×0.3189+0.7×0.0410) = 360.80% 이하(주거용적률 324.72% 이하)		
구분	전용면적	공급면적	대지면적	증가용적률	비고
소형주택	59.98㎡	82.47㎡	14,328.7㎡	25.98%	
산출근거	• 연면적 = 14,328.7㎡×25.98% = 3,722.24㎡ • 세대수 = 3,722.24㎡ / 82.47㎡ = 45.13세대 이상(계획 46세대)				

■ 기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현황

구분		기반시설부담		비고
		기준	계획(안)	
용도지역 상향	3종 → 준주거	15%(2,772.90㎡)	27.01%(4,992.79㎡)	무상양여 185.68㎡

바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	비고
도시경관	•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•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		
환경보전	자연환경	• 절·성토의 균형고려, 지형변화의 최소화 •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•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바이오톱(biotop)공간확장	
	생활환경	•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(LNG)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	
	사업시행시 환경영향	• 대기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,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	
재난방지	수재해	•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평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	
	산사태	•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, 벽면의 상·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	
	화재	•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	

사. 정비사업 시행예정계획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계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기정	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	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	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-현황 : 386세대 -계획 : 421세대	
변경	"	"	"	-현황 : 386세대 -계획 : 553세대	

아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- 동소문 제2구역 대상지 반경 500m이내 삼선초등학교, 삼선중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, 대상지는 상대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내에 포함되지 않음

■ 인근 및 단지내 정화구역 계획

학교(구분)	위치	절대정화구역	상대정화구역	거리	비고
삼선초등학교	성북구 삼선동 3가 30-4	해당없음	해당없음	360m	
삼선중학교	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0-1	해당없음	해당없음	230m	

■ 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근거법조	• 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2」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료 • 절대정화구역 : 학교출입문(정문,후문 등)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• 상대정화구역 : 학교경계선(울타리)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구역의 제외된 지역 • 다만,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서울시 서부교육청의 「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」심의를 거쳐서 “인정(해제)된”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됨	
설치가 절대 불가한 행위 및 시설	• 배출허용(규제)기준과 행위 및 시설(대기·악취·수질·소음·진동), 제한상영관, 도축장, 화장장(납골시설), 폐기물처리시설·폐수종말처리시설·축산폐수배출시설·축산폐수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, 가축사체처리장, 동물가죽가공처리시설, 전염병원, 전염병격리병사, 격리소, 전염요양소, 진료소, 가축시장, 전화방, 성기구취업소	
심의후 설치가 가능한 행위 및 시설	•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, 고압가스·천연가스·액화 석유가스제조소 및 저장소, 영화상영관(대학제외), 폐기물수집장소, 유흥·단란주점, 호텔·여관·여인숙, 사행행위장·경마·경륜·경정장(장외발매소 포함), 특수목욕장중 증기탕, 무도학원·무도장,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시설	
유치원과 대학은 적용제외	• 당구장, 게임제공업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일명PC방), 만화가게, 노래연습장 영업시설, 담배자동판매기, 비디오물감상실업, 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	

자.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

1) 정비구역의 주택현황

■ 건축물 동수

[단위 : 동]

구역내 건축물 동수				구역내 건축물 동수			
계	주거용건축물	비주거용건축물	미기재	계	유허가	무허가	미기재
189	141	42	6	189	180	4	5

■ 거주현황

유형별주택호수		거주 가구수			구역내 거주 인구수			비고
		소계	가옥주	세입자	소계	가옥주	세입자	
계	189	261	77	184	569	168	401	
단독주택	189	261	77	184	569	168	401	

■ 규모별 건축물현황

[단위 : 동]

구역내 건축물 규모						비고
구분	소계	60㎡미만	60~85㎡미만	85㎡이상	미기재	
계	189	149	29	6	5	
주거용	141	117	21	3	-	
비주거용	42	31	8	3	-	
미기재	6	1	-	-	5	

2)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

[단위 : 세대]

구분	합계	전용면적 60㎡미만	전용면적 60~85㎡미만	전용면적 85㎡이상	비고
계	553	329	178	46	
분양	445	258	141	46	
임대	71	71	-	-	
국민주택규모 (임대)	37	-	37	-	

차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가구	면적(㎡)	획지			비고
			위치		면적(㎡)	
기정	동소문동 33번지일대	20,657.3	획지①	동소문동 33번지일대	15,319.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판매시설
변경	동소문동 33번지일대	18,486.0	획지①	동소문동 33번지일대	14,328.7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

카.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관한 계획

-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. 다만,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, 서울시에 매각(처분)해야 함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.

■ 임대주택 건설계획

계획기준	• 임대주택 건설 :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% • 임대주택 전용면적 40㎡이하 : 임대주택 세대수의 40% 미만의 범위에서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		
산출근거	• 전체 세대 수 : 465세대 = 553세대 - 88세대(초과용적률 증가분) • 재개발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: 164세대 -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 수(초과용적률 증가분 제외)의 15%이상 $465\text{세대} \times 15\% = 69.75\text{세대}$ $\therefore 71\text{세대 계획} > 69.75\text{세대}$ • 임대주택 전용면적 40㎡이하 : 임대주택 세대수의 40% 미만의 범위에서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 - 71세대의 40% 미만 : 28.4세대 - 71세대의 30% 이상 : 20.92세대 - 465세대의 5% 이상 : 23.25세대 $\therefore 28.4\text{세대} > 28\text{세대 계획} \geq 23.25\text{세대 또는 } 20.92\text{세대}$		
건립규모	세대 수	전체 비율(%)	임대주택 비율(%)
합계	71	15.27	100.0
전용 39㎡	28	6.02	39.44%
전용 59㎡	43	9.25	60.5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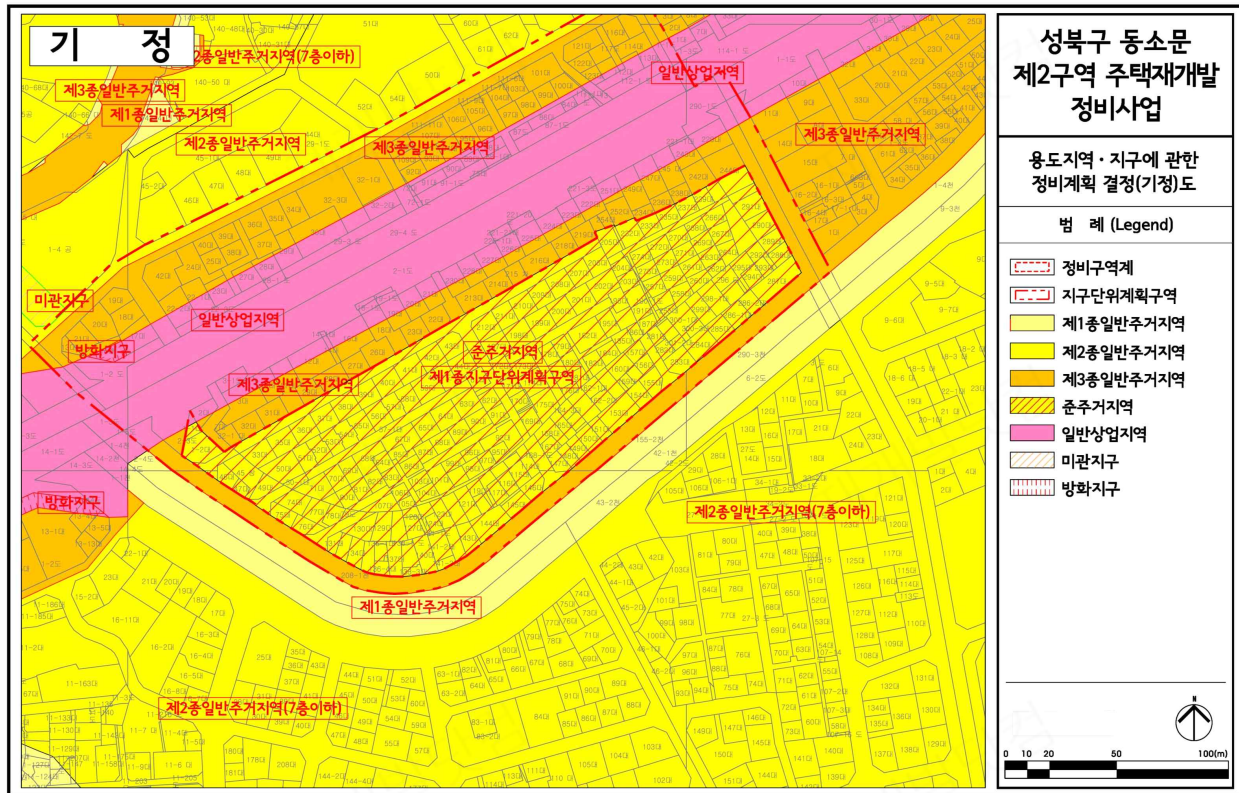
■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구분		내용				
계획 기준		•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: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 이상 •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				
법적상한용적률 (건축계획)		• 419.93% (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)				
상한용적률 (정비계획용적률)		• 360.73%				
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면적	용적률 증가분	• $419.93\% - 360.73\% = 59.20\%$				
	증가된 용적률의 50%	• $59.20\% \times 50\% = 29.60\%$ • $14,328.70\text{㎡} \times 29.60\% = 4,241.03\text{㎡}$				
	의무 연면적	• 4,241.03㎡ 이상				
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(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)		구분	전용 면적	공급면적	세대 수	연면적
		획지1	84.98㎡	115.57㎡	37	4,276.09㎡
						> 4,241.03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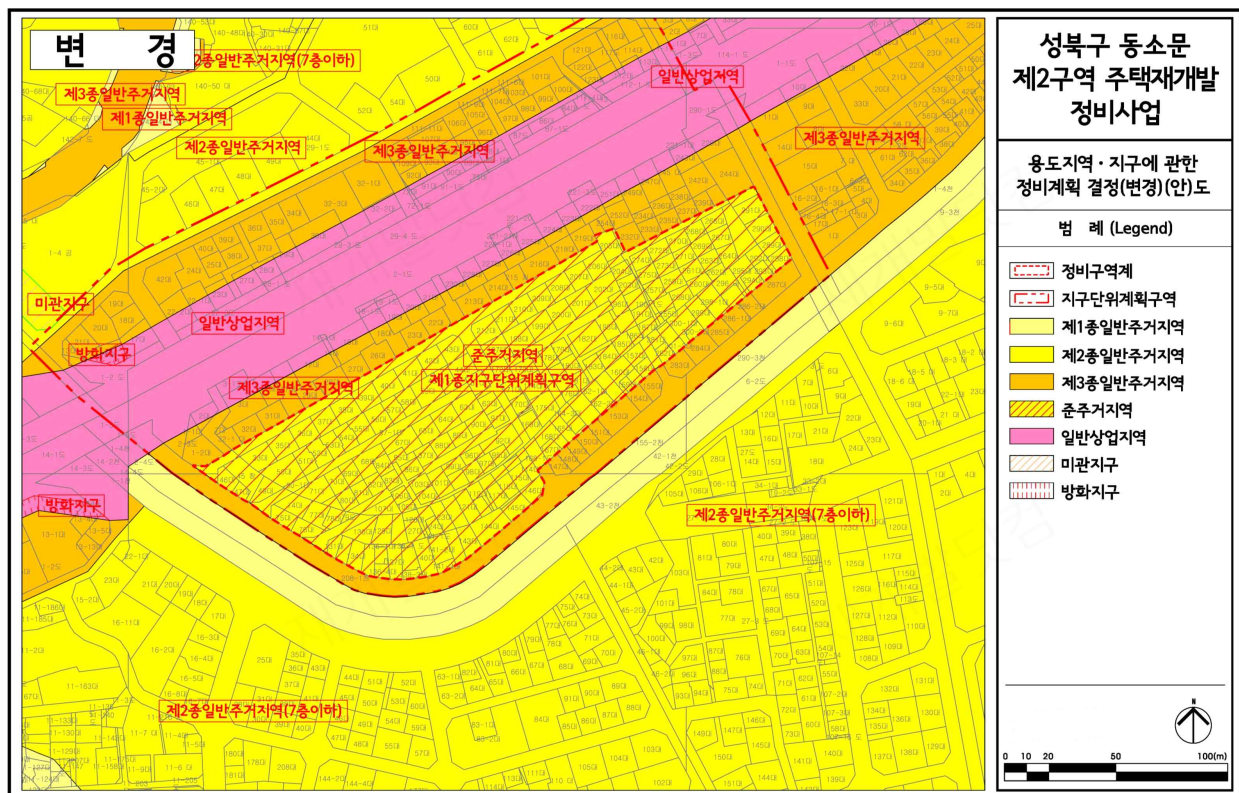
Ⅱ. 관계도서는 생각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41-2863) 및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764-3511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

<관련도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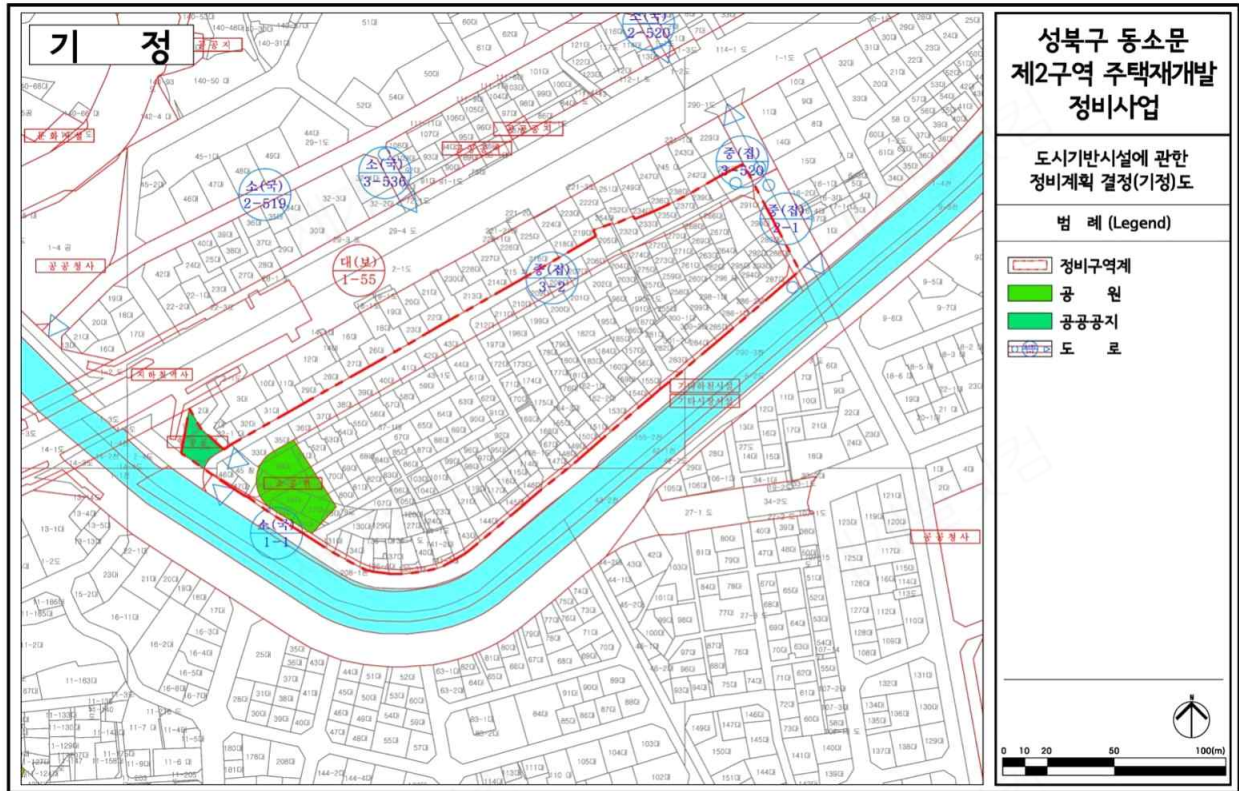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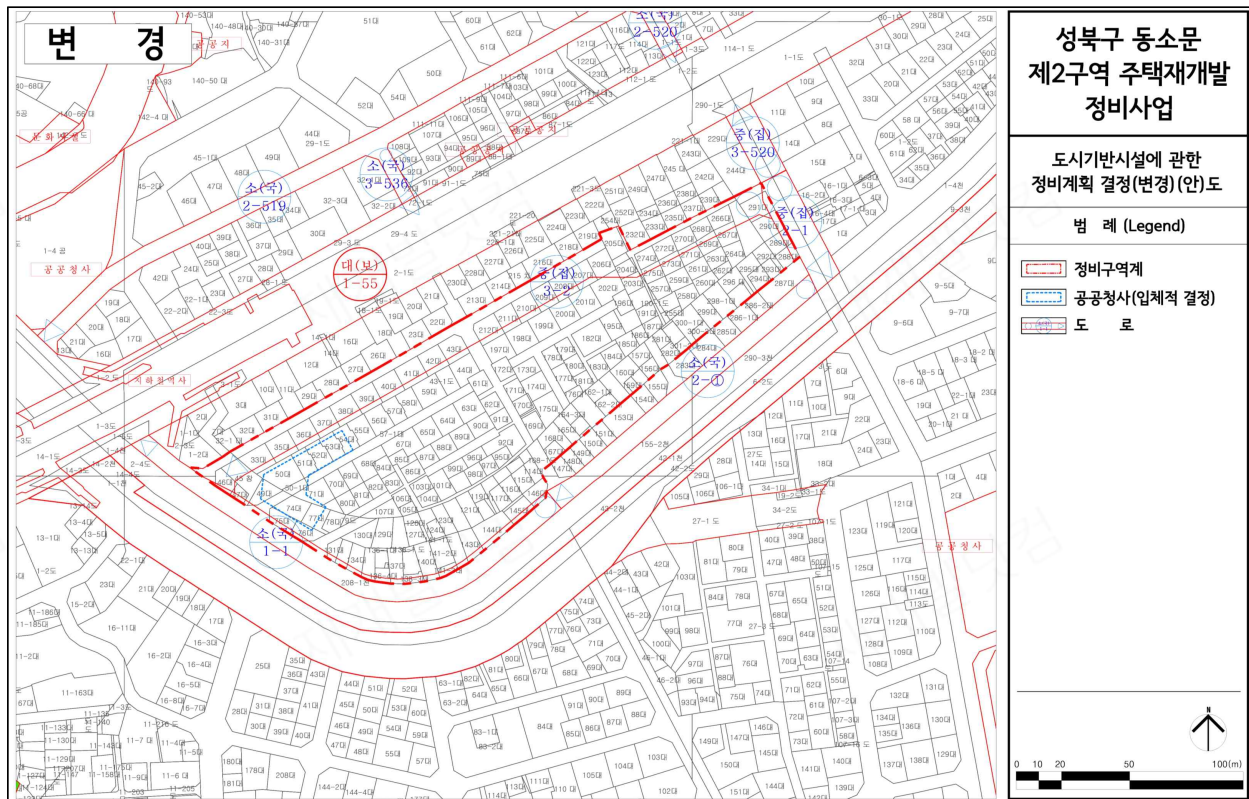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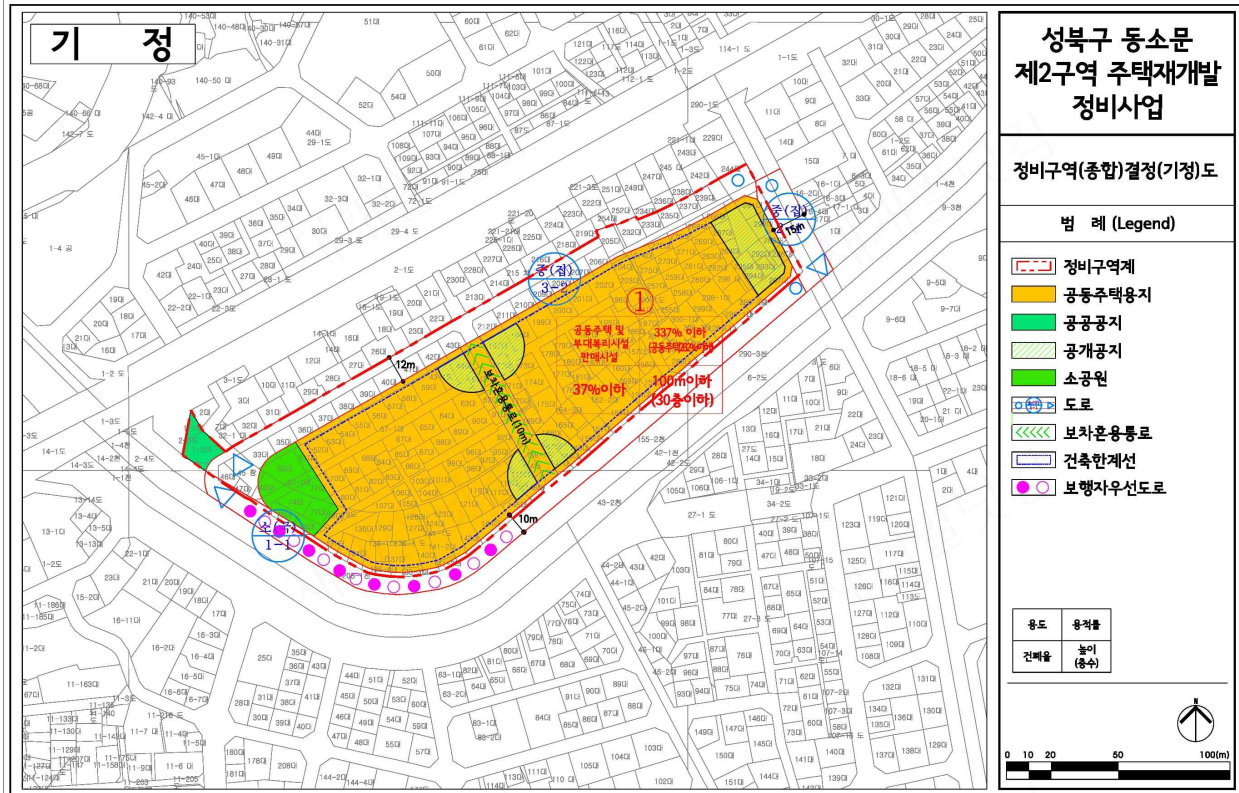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

■ 도시기반시설 결정(변경)(안)도



■ 정비구역(종합) 결정(기정)도



■ 정비구역(종합) 결정(변경)(안)도



인 사

《발령 제298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고 제 은	지 방 간 호 서 기 시 보 에 임 함 보 건 소 근 무 를 명 함	《신	규》
2	박 선 영	지 방 간 호 서 기 시 보 에 임 함 보 건 소 근 무 를 명 함	《신	규》

(시행일자 : 2022. 9. 28.字)

《발령 제299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이 은 총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질병)을 명함 (2022.09.28.~2023.02.27.)	건강관리과	지 방 간 호 서 기

(시행일자 : 2022. 9. 28.字)

《발령 제300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김 유 진	복 직 을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22.10.01.~2023.12.31.)	행 정 국	지 방 간 호 서 기
2	박 선 주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22.10.01.~2023.09.30.)	주거정비과	지 방 시 설 서 기 보 시 보 (건 축)

(시행일자 : 2022. 10. 1.字)

《발령 제301호》

연번	성명	발령내용	현직	
			소속	직급
1	정지원	복직을명함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근무를명함	행정국	지방녹지서기
2	심한나	복직을명함 보건소 근무를명함	행정국	지방간호서기 보

(시행일자 : 2022. 10. 1.字)

《발령 제303호》

連番	姓名	發令內容	現職	
			所屬	職級
1	김영분	복직을명함 돈암제1동 근무를명함	행정국	지방사무운영주사
2	박기분	행정국 자치행정과 근무를명함	돈암제1동	지방행정주사보
3	이성은	기획예산과 근무를명함	지적과	지방행정서기
4	이봄이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길음제2동 근무를명함	《신	규》
5	정하연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월곡제1동 근무를명함	《신	규》

(시행일자 : 2022. 10. 1.字)

《발령 제304호》

連番	姓 名	發 令 內 容	現 職	
			所 屬	職 級
1	강 길 원	복 직 을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22.10.01. ~ 2023.05.31.)	행 정 국	지방행정주사
2	이 선 경	복 직 을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가족돌봄)을 명함 (2022.10.01. ~ 2022.12.31.)	행 정 국	지방행정주사
3	김 경 아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(연장) (2022.10.01. ~ 2023.06.30.)	행 정 국	지방행정주사보
4	석 민 영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질병)을 명함(연장) (2022.10.01. ~ 2022.12.31.)	행 정 국	지방행정주사보
5	황 문 호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22.10.01. ~ 2023.06.30.)	월 곡 제 2 동	지방행정주사보
6	김 민 아	복 직 을 명 함 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22.10.01. ~ 2023.12.31.)	생활보장과	지방사회복지 주 사 보
7	최 미 희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질병)을 명함(연장) (2022.10.01. ~ 2022.12.31.)	행 정 국	지방행정서기
8	박 미 정	복 직 을 명 함 (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예정)	행 정 국	지방사회복지서기

連番	姓 名	發 令 内 容	現 職	
			所 屬	職 級
9	최 고 은	행 정 국 근 무 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 (2022.10.01. ~ 2023.12.31.)	중 암 동	지방사회복지사기

(시행일자 : 2022. 10. 1.字)

《발령 제305호》

連番	姓 名	發 令 内 容	現 職	
			所 屬	職 級
1	김 미 선	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(육아)을 명함(연장) (2022.10.02. ~ 2023.09.30.)	행 정 국	지방행정주사보

(시행일자 : 2022. 10. 2.字)

《발령 제306호》

連番	姓 名	發 令 内 容	現 職	
			所 屬	職 級
1	채 송 화	복 직 을 명 함 (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예정)	행 정 국	지방행정주사보

(시행일자 : 2022. 10. 3.字)

《발령 제307호》

연번	성 명	발 령 내 용	현 직	
			소 속	직 급
1	김 평 진	지방별정직7급상당(비서)에 임함 행정국 행정지원과 근무를 명함	《 신	규》
2	신 봉 준	지방별정직9급상당(비서)에 임함 행정국 행정지원과 근무를 명함	《 신	규》

(시행일자 : 2022. 10. 1.字)

